

전 · 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

2021. 03.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

제1조 (법적근거)

본 규정은 2021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초 · 중 · 고등학교 전 · 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근거로 한다.

제2조 (목적)

제1조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전 · 편입학 및 재입학’ (이하 ‘전 · 편입학’ 이라고 함)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수요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

전·편입학, 재입학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진학진로 상담부장, 학생인성인권부장, 해당 학년부장, 학적계로 구성한다.

※ 사안에 따라 해당 학년 담임 및 해당 학급 담임이 협의회에 참여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제청한다.

- ①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
- ② 재입학에 관한 사항
- ③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 ④ 기타

제5조 (기본 방침)

2021학년도 초 · 중 · 고등학교 전 · 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의 평준화지역 일반 고등학교 계획에 준하되, 학교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규정을 학교 누리집에 탑재해야 한다.

제6조 (전입학 등 운영 준수 사항)

1.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공개

가.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대장’을 학년별 · 계열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교무실에 비치하고, 해당학교 누리집에 탑재한다.

나. 교직원 및 민원인이 요구 시에는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2. 전 · 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 비치

- 가. 전 · 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전 · 편입학 희망자에게 전 · 편입학 해당 법규에 위배되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순서대로 수시로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그 순위를 확인시킨다.
- 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전 재적교의 결석 등 생활지도상의 문제를 이유로 접수를 불허할 수 없다.

3. 전 · 편입학 허가

- 가. 전 · 편입학의 허가는 접수순으로 한다.
- 나. 아래의 정원 외 학생 수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용한다.

대상자	정원 외 허용 범위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연관법령
유급생	대상자전원	제51조 제1호	
재 · 편입학 대상자	대상자전원	제51조 제3호	
수율지구 주민의 자녀	대상자전원	제51조 제5호	
야간부 고교 폐교자	대상자전원	"	
가정(성)폭력 피해학생	대상자전원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4 성폭력방지법 제7조
특수교육대상자	대상자전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8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3%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특례귀국자	2%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일반귀국자	3%	제51조 제5호	
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3%	제51조 제4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2%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82조 제3항 제3호, 제82조의 2
타시·도 전입자	3%	제51조 제5호	
군인자녀	3%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자		"	

※ 참고사항

- 항목별 총합이 정원 외 5%를 넘더라도 각 항목별 정원외 비율 이내에는 전 · 편입학을 허용
- 일반귀국자 정원 외 3%는 특례귀국자 정원 외 2%를 포함
- 군인자녀는 보호자의 근무지역 변경 또는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인 경우에도 정원 외로 허용
-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함
- 초등학교 · 중학교의 경우 대상자 모두를 정원 외로 허용하되 중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교육장이 자체 업무 시행 계획을 통하여 정원 외 허용범위 변경 가능

제7조 (전입학 등 절차)

1. 고등학교 재학생 - 정원 내 대상자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재적학교) →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지참 전입학 신청(전입 희망학교) → 전입학 상담 → 전입학 심의위원회 → 전입희망교에서 전산자료 송부요청 → 재적학교 전출 수속(재적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 건강기록부 이송) → 전입학 수속(해당학교)

2. 자퇴 및 퇴학생의 재입학 및 편입학 - 정원 외 대상자

가. 재입학

- 대상자: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서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
- 절차: 희망자가 원적교에 재입학 원서를 작성하여 재입학을 신청하면 원적교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재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정원 외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음
※ 원적교 학교장은 재입학을 하는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수시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퇴 및 퇴학 당시의 학년도에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나. 편입학

- 대상자: 도내 고등학교에서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
- 절차
 -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
 - 귀국학생 등: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 · 편입학 업무처리요령'에 따름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대상 학생: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에 따름
 - 원적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재학당시 학년으로 다시 입학
 - 자퇴 및 퇴학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부터 가능
 - 보편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적교에 재입학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원적교 학교장의 추천과 편입학할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시행
 - 원적교 학교장은 담임교사를 통해 추천서를 작성하여 편입학용 재학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 등을 첨부하여 편입학을 원하는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직접 편입학을 공문으로 요청
 -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편입학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정원외로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음

- 다. 야간부 고등학교 휴학자, 자퇴자, 중도탈락자 중 야간부 고등학교 폐교로 재입학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계열 주간부 고등학교에 정원외로 전 · 편입학 할 수 있음

3. 귀국학생 등의 편입학 - 정원 외 대상자

- 가. 대상자: 외국에서 수학하다가 귀국하여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로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 1) 특례대상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1호 ~ 4호 해당자)
 - 가)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3)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 고등학교 특례편입학의 경우 중학교 전·편입 및 졸업 조건 불필요

2) 일반귀국자: 특례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귀국자

3) 일반귀국자의 편입학은 원적교로의 편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절차: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 및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
-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을 참조

4.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의 전입학 - 정원 외 대상자

가. 대상자

- 1)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가벼운 다툼 제외), 기타 선의의 피해 등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학교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는 자
- 2) 재적학교에서 가정(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요청한 자
- 3) 심각한 질병(지체부자유자,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및 부상 등으로 인해 통학상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이 전입학을 요청한 자

4)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단, 통학거리 사유로 인한 교육환경 전환은 불가함

나. 절차

- 1) 학교장이 해당 학생에 대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대상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전입학 요청서를 작성
- 2) 학교장이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입학을 희망하는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공문으로 요청
- 3)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용
 - * 가정(성)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의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전입학의 경우 가정(성)폭력상담소 또는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입소 확인서" 이외의 재적학교 담임교사가 작성한 학교장 전입학요청서 및 교육지원청의 배정확인서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
 - * 가정(성)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이 재적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전입학할 학교에 직접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도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입증서류를 확인하여 별도의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전입학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전학으로 처리(허용)
 - *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해당 전입학을 비밀로 조치하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 * 전·편입학 관련 담당자는 가해자(가해자가 피해학생의 친권자 및 보호자라 할지라도)에게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한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 * 가해자에게 전·편입학 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가해자의 폭력 등의 위험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로 연락하여 저지한다.
 - *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처리 서류는 2차 피해 발생을 막고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 한다.
- 4) 비평준화지역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입학이 불가능 할 때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전입학 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가능
- 5)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의 교육환경 전환에 따른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음. 단,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비평준화지역 동일학교에 입학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와 가정

- (성) 폭력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의 전입학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 후,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입학 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한 자
5.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강제전학-정원 외 대상자
 가. 대상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 후,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입학 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한 자
- 나. 절차
 1) 교육장은 학교장이 요청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전입학 할 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
 2) 교육장이 해당 학생을 관할구역 이외의 학교에 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자체 배정위원회 등을 통해 관외 전입학을 결정한 후 전입학할 지역과 학교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배정을 요청
 3)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할 수 없음
- 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 재배치 처리 절차: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학조치 결정→지역교육지원청 전·편입학배정위원회 심의→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재배치
- 라. 유의사항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2)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 원칙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정 가능
 나)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이후 불가피하게 계열을 달리하여 동일지역에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일지역으로 배정 가능
 3) 학교장은 ‘전입학 허용기간(시기)’과 상관없이 강제전학 요청 가능
 4)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음
 5) 관외지역 또는 동일지역 내 읍·면·동을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읍·면·동지역의 학교로 전·편입학할 수 없음
 6)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할 수 없음
6.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강제전학 - 정원 외 배정 대상자
 가. 대상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요청하여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입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한 자
- 나. 절차
 1) 교육장은 학교장이 요청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전입학할 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
 2) 교육장이 해당 학생을 관할구역 이외의 학교에 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자체 배정위원회 등을 통해 관외 전입학을 결정한 후 전입학할 지역과 학교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배정을 요청
- 다. 유의사항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 교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2)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 원칙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정 가능
 나)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이후 불가피하게 계열을 달리하여 동일지역에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일지역으로 배정 가능
 3) 학교장은 ‘전입학 허용기간(시기)’과 상관없이 강제전학 요청 가능
 4)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교원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할 수 없음
 5) 관외지역 또는 동일지역 내 읍·면·동을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읍·면·동지역의 학교로 전·편입학할 수 없음
 6)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할 수 없음
 7) 고등학생 강제전학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강제전학으로 학생 배정 후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참고자료(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별표 1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7. 소년원 재소자: 해당학교로 신청

- 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 편입학)에 따라 전 · 편입학할 수 있다.
- 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 편입학)에 따라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8.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해당 학년의 정원내 결원이 있는 경우 정원내로 허용한다. 다만, 학년결정 입학신청일 당시 존재하던 결원이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허용 이전에 전 · 편입학 등으로 충원된 경우 정원외 2%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가.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대상

-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특별학급) 등]에서 2학기(1년)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2학기(1년)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학원 등 사교육 관련 기관에서 이수한 학습 경험은 제외

* 1학년 3학기 또는 4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학습기간은 1년 단위의 3학기 또는 4학기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학기(3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또는 3학기(4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과정까지만 이수한 경우는 1학기 과정만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전 · 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재

학 중인 학생은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적용대상에서 제외

- ‘학교외 학습 경험’의 1학기 과정은 매년 3월초에서 8월말까지 또는 9월초에서 다음 학년 2월말까지의 학습 경험으로 함
- 나.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
 - 입학 신청자가 입학 희망학교로 해당 학기 시작 20일전까지 ‘학년결정 입학신청서’ 와 ‘학교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을 신청한다.(‘학년결정 입학신청서’ 는 학교 제공)
 - ‘학교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는 재학(제적 · 자퇴)증명서, 이수(수료)증서 및 관련자료 등을 활용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학교외 학습경험’을 심의한다.
 -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에서는 입학 신청자에게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실시한다.
 -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입학신청자에게(허가하는 경우 허가 학년을 포함하여) 통보하고, 미 통과자에게는 입학 불허를 통보한다.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 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적은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NEIS 학적처리 포함)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



다. ‘학교외 학습경험’ 심의 기준

- 1)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학기 평균 11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학습 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한다.(학기평균 11주 미만 또는 주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 시수를 합산하여 심의 가능)

심의 기준 근거

- 학기평균 11주
 - 171일(정규학교 연간 최소 수업일수) × 2/3(정규학교 학년수료 기준)=114일
 - 171일=주 5일 수업 기준수업일 190일-19일(190일의 10분의 1)
 - 114일 ÷ 5일(주당 수업일)=22.8주(연간, 학기당 11.4주)
- 주평균 20시수
 - 30시수(고등학교 주당 일반교과 수업시수) × 2/3(비정규 교육시설 감안)=20시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와 관련된 수업일수 기준
 -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도 190일 이상
 - 다만, 현재자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와 관련된 수료 기준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2) 해당 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과락 기준 및 불합격 기준을 신청서 접수 이전에 결정하여 학교 누리집 또는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그 외 입학신청 이후 정원 변동 사항 등 학생·학부모가 궁금해하거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입학 신청자에 대한 사전 안내사항도 학교 누리집에 게재한다.
- 라.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기준
 -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방법과 내용은 해당 학교의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 가) 일반고 지필평가 예시: 국어, 영어, 수학, 사회(또는 과학) 교과별로 1개 이상의 과목에 대하여 지필평가(반드시 지필평가의 방법이 아니어도 관계없으나,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할 때에도 이를 기록한 회의록 등이 첨부되어야 함)를 실시한다. 단,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교과 과목을 포함하거나 전문교과 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며, 사회(또는 과학)교과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편성·운영 중인 과목 중 입학신청자에게 선택 기회를 부여한다.
 - 나) 학교 상황에 따라 지필평가 과목 변경 및 과목 수 가감 가능(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전문교과 과목 포함 또는 전문교과 과목만으로 대체 등 포함)
 - 2) 지필평가 내용과 범위 및 나이도는 입학 신청 학년 직전 학기 해당 학교 정기

고사 수준으로 출제한다.(예: 고2 입학 신청자에 대해 고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범위에서 출제)

-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과락 기준, 합격·불합격 기준 등은 해당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하여 학교 누리집에 사전 안내하고 학교규칙에 반영하여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한다.
- 4) 문제지, 답안지 등 심의 및 평가(근거)자료는 해당 학생 졸업 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 이상까지 학교에서 보관한다.

마. 입학 신청자에 대한 사전 안내 내용

- 1) 고등학교별 학년결정 입학 가능 학생수를 학기 시작 1개월 전에 교육청 또는 학교별 누리집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 2) 해당 학교 학년결정 입학신청자 수가 입학 가능 학생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수의 입학신청자 모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결원범위 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3) 기준일 이후 전입학 등 사유 발생 시 공시된 정원 변경 가능성도 함께 안내한다.

9. 입학전 전입학 - 정원 외 대상자

가. 대상자: 전라북도 전입자 입학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전라북도 내로 이전 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해당 시·도의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등록을 마친 자
-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타 시·도의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등록을 마친 자

* 도내 중학교를 졸업(예정)한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또는 도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는 입학전 전입학이 불가능 함

나. 절 차

- 1) 접수시기: 학교장이 2월 중 정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와 상담 필요
- 2) 처리절차
 - 가) 타 시·도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합격 후 등록을 마침
 - 나) 전라북도 내 거주지 이전 완료
 - 다) 전라북도 내 거주지 소재 입학 희망교를 방문하여 상담(주민등록등본 제출)
 - 입학전 전입학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입학 희망교의 학교장이 허가하는 것을 확인 한 후 다음단계로 진행 할 것
 - 입학전 전입학 허용 및 입학자격, 입학시기 등은 입학 희망교의 해당 학교장이 정함
 - 라) 입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누리집에서 전입자 입학원서 출력

- 마) 타 시 · 도 입학예정 고등학교의 타 시 · 도 입학식 전 전출 상담 및 입학원서의 확인 서류 작성
- 타 시 · 도의 입학예정 고등학교에서 직인으로 입학예정 사실을 증명
 - 타 시 · 도의 입학예정 고등학교에서 전출 허용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방법 등을 확인 (등록금 반환 등 제반 사항은 학생 층에서 해결해야 함)
- 바) 타 시 · 도의 입학예정 고등학교에서 전출을 허가 받은 후 출신 중학교의 직인으로 배정사실을 증명
- 사) 전입자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내 비평준화지역 입학희망 고등학교에 제출
- 아) 해당 학교에서는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처리 후 등록금 고지서 발급
- 자) 등록금 납부 확인 후 학생의 출신중학교에 전출 동의 및 나이스 자료 요청 공문 발송
- 차) 출신중학교에서 자료를 송부하여 입학전 전입학 처리 완료

제8조 (전 · 편입학 시기)

1. 동일계열로의 전입학
 - 3학년 1학기 2차(기말) 고사 실시 전까지

2. 계열을 달리하는 전입학
 -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 나. 계열을 달리하는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의서를 받고 전입학 허용
 - 다. 타 시 · 도 전입생 및 체육특기생, 본인 희망 등 불가피하게 위 기한을 넘어선 시점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전입학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의서를 받고 전입학 허용
3. 재입학 및 편입학: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2학기 시작 전 까지 수시로 허용

4.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해당학기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 학교장은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까지 허용 여부 통보

5. 입학전 전입학: 학교장이 2월 중 정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와 상담 필요

제9조 (구비 서류)

1. 일반학생의 전입학 제출서류
 -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서식)
 -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다. 주민등록등본 1부
 - 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 자퇴 및 퇴학생 제출서류
 - 가. 재입학
 - 재입학원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서식)
 - 나. 편입학
 - 편입학원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1부(원적교 재입학 불가 사유 포함)
3.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제출서류
 - 가. 공통 제출서류
 -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학부모의 전입학 요청 사유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교장 의견서 1부: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함
 - 전입 희망교의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1부
 - 나.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 등 선의의 피해학생 제출서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 다. 가정(성)폭력 피해학생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불필요
 - 가정(성)폭력 상당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 확인서” 또는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 1부
- 라. 심각한 질병 및 부상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학생 제출서류
- 1) 지체부자유자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지체부자유 확인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2)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 종합병원 진단서 1부(사유를 입증하는 병명을 기재)
 - 3) 기타 불가피한 사유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1부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출서류
- 가.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1부
 - 나.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1부
 -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사본 1부
 - 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마.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5. 수ول지구대상자 제출서류
-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다. 주민등록등본 1부
 - 라. 수ول지구 대상자 증명서 혹은 수ول지구 이주자 증명서 1부
6.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제출서류
-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다.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7. 귀국학생 등 제출서류: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 참조
8.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출서류
-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다. 주민등록등본 1부
- 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해당 기관장 확인)
- 마. 학력보증서 및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 기관장 확인)
9. 체육특기자 제출서류
-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다.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1부
 - 라.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1부
 - 마. 고입 체육특기자 선배정 공문 1부(해당 학생 확인이 가능한 명단 포함)
10. 체육특기자 중 일반학생 전환자 제출서류
-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다. 주민등록등본 1부
 - 라. 고입 체육특기자 선배정 공문 1부(해당 학생 확인이 가능한 명단 포함)
 - 마. 학교에서의 일반학생 전환 증빙서류 1부(일반학생 전환 협의록, 내부결재 등)
11. 입학전 전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 가.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라북도 전입자 입학원서 1부
 - 나.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1부
 - 다. 주민등록등본 1부
12.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의 확인서류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 서류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 (학생)제적등본 1부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학생)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친권자의 전입학(배정) 동의서(자필로 작성, 전입학 위임내용을 포함) 1부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1통과 현재 계약서 사본 1통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학교장 추천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양육시설 입소 확인서 1부
▪ 학생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학생 기본증명서 1부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 학교장 추천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거주지 확인서 등
○ 아동 친권자의 연락두절이나 연락불가(수강 등)로 친권자 역할이 불가한 경우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부(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입학 신청서 제출 시: 거주지 이전 확인서 제출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입주확인서 첨부

제10조(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1.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및 제82조의2

구분 (제82조 제3항)	자격 요건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2호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2호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구분 (제82조 제3항)	자격 요건
제3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종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4호 (북한이탈주민 등)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종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가. 제1호 해당자 세부내용
- 1) 초등학교 및 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이면 특례입학 가능
 - 2) 총 교육연한 9년과 상관없이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이면 특례입학 가능
- 나. 제2호 해당자 세부내용
- 1) 외국의 학교
 - 가) 거주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
 - 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하였던 자는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함
 - 다)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외국의 학교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 2) 2년 이상 재학 및 2년 이상 거주
 - 가)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총 3년의 기간이 필요함
 - 나) 초등학교 1~3학년은 특례입학의 재학기간 산정에서 제외
 - 다) 외국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에서 미달된 때에는 각각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3) 국내의 중학교에 전입학 또는 편입학

- 가) 국내의 중학교에 신입학 하는 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나)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7~9학년) 과정의 일부를 이수해야 함

※ 외국에서 4~6학년을 이수한 학생이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재취학할 경우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7학년 이상)의 일부를 미이수 하였으므로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다)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함

-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4)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 가) 부모의 거주는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학생과 동일국가 거주)
- 나) 한부모 가정의 학생은 부모 중 1명일 경우에도 해당
- 다)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는 기간 내에 학생과 동일한 국가에서 실제 1년 이상 부모가 함께 체류하여야 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
- * 학생이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을 거주하였지만, 실제 학생과 부모가 동일국가에서 체류한 기간이 아버지는 1년 8개월이고 어머니는 10월인 경우 어머니의 체류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특례입학 대상자가 될 수 없음(체류기간은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처럼 2개월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없음)

5) 외국에서의 거주·체류·재학 기간 적용 기준 정리

구 분	거주기간	체류기간	재학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녀	2년 이상		2년 이상	거주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다. 제2호 나목 해당자 세부내용

- 1)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2) 외국정부의 초청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교수요원의 자녀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이 아니므로 대상자가 아님

라. 제2호 다목 해당자 세부내용

- 1) 외국인 학생
 - 가) 외국인 등록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 이거나 또는 외국인 등록증의 국적(국가지역)을 확인하여야 함
 - 나) 지원자의 성명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에 명시된 성명을 기재하거나, 번역공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번역된 성명을 기재
- 2)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
 - 가) 부모의 국적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으로 확인
 - 나)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2. 중·고등학교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자격

구 分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단,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 세부내용은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 해당자 세부내용 가~라'에 준함

3. 특례입학 내용

구 分	일 학 정 원	선 발 방 법	근 거
고등학교	해당학교 학년 정원의 정원외 2%	귀국학생 등이 해당학교에 관련서 류를 갖추어 입학심사를 요청하면, 해당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대조·확 인하여 심사한 후 학교장이 입학허 가를 결정	『초·중등교육법시 행령』 제51조 제2호 및 제82조 제3항

4.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종류별 인정범위

구 分	특례입학 인정 범위
외국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자	동일급별 학교에의 특례편입학 또는 특례입학 자격요건을 갖춘 후 국내 직 상급학교에의 특례신입학 가능
외국소재 초·중학교 졸업자	특례입학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국내 직 상급학교에의 특례신 입학 가능

5.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허용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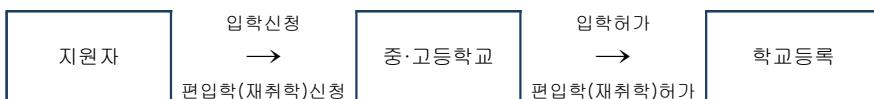
구 分	고 등 학 교
특례편입학 (특례재취학) 예정자	외국소재 고등학교 최종 재학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2개학기만 특 례편입학 허용)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학생의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3년 6개월 이내(2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소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	해당학생의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1년 6개월 이내(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및 정부 초청 귀국자의 자녀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2학기 이후로 재취학하여 졸업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특례 입학 가능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1학기로 재취학한 경우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가 아님)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기간의 제한 없이 특례입학 가능

6.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효력

구 분	고 등 학 교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예정자	고등학교 편입학 시 1회 특례 인정
특례입학 예정자	고등학교 신입학 시에만 1회 특례 인정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효력의 제한 없이 특례입학 가능

7.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재취학) 절차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재취학) 희망자가 입학은 희망교에, 편입학(재취학)은 원적교 또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직접 입학 및 편입학(재취학)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해당학교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중학교의 경우 해당지역 교육장이 정원 외 허용범위 결정)에서 정원 외로 학교장이 허가를 결정

8.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학년 결정: 인정유학에 한하여 적용 가능

- 가. 외국 재학학교와 동일한 학교과정·동일학년·동일학기 이하로 신입학 및 전·편입학(재취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학업 종단이 있는 경우에는 총 수학기간에 의해 신입학 및 전·편입학 학교급 학년을 결정
- 나. 학업의 종단 없이 계속하여 수학하였으나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신입학 및 전·편입학(재취학) 하려는 경우 1학기(6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다. 국내에서 계속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월반 귀국하여 신입학 및 전·편입학(재취학)을 할 경우 외국에서 재학한 학년에의 신입학 및 전·편입학(재취학)은 가능하나,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이 1년(2개 학기) 이상 부족한 경우의 상급학교 특례입학은 불가능

9. 제출서류: 귀국학생 등 해당자별 구비서류 참조

- 가. 부정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나. 부정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제출서류 일부를 생략하거나 서식 일부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전라북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을 준용하고,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1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6>

전 · 편입학 신청서 및 신청확인서

전 · 편입학 신청서

1. 학생소속 : ()학교 ()학년 ()반
2. 학생성명 : () 성별 ()
3. 주소 및 연락처 : () 전화 : ()

위와 같이 귀교에 전 · 편입학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재학증명서 1통(전입학용)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필자)

전 · 편입학 신청확인서

1.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2. 학생성명: () 성별 ()
3. 전 · 편입학 순위: ()순위
4. 학교 전화번호: 교무실 (), 행정실 ()

위와 같이 본교에 전 · 편입학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직인)

()귀하

<서식 7>

거주지 약도

거주지 약도



- 큰 도로 및 건물을 중심으로 자세히 기재
- 승차버스 번호와 버스정류장 기재
- 주택 소유자 또는 문패 성명 기재

상기 거주지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 서명 또는 인

※ 전입학 이후 거주지 이전 확인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실 확인 후 작성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교육환경 전환 요청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교장 의견서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교육환경 전환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증빙서류: 1.

2.

20 년 월 일

담당교사: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직인 (사인)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0>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고등학교 경우 -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만 해당)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입학 등록 내용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그에 대해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학교로의 전입학을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기재)

상기 학생 ()의 ()시·군()학교로의 전입학
을 동의하며, 추후에 본 전입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교무부장(또는 교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직인 (사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1>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결과 보고서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결과

○○교육지원청

※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12>

편입학용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편입학용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원적교 재입학 불가 사유

(학업중단 학생이 원적교로 재입학 할 수 없는 사유 기재)

<서식 13>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 사유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 배정을 요청하는 객관적 사유 기재)

(예시) 본교에 재학 중인 (학년반 성명 기재)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이 요청되었기에 전입 학교 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사안에 대해 본교로의 전입학 요청 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타학교에 우선하여 전입학을 허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직인 (사인)

교무부장(또는 교감):

(서명 또는 인)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직인 (사인)

()교육장(학교장) 귀하

전라북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14>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서식 15>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 . .	
학교장(교육장)이 지정하는 배정 희망교(※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아님)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		학교		학교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현주소					
권고 사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전학 권고 사유					
<p>위 대상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관련 절차에 따른 충분한 상담지도과정을 거쳤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가해자의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p>						
20 년 월 일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직인 (사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p>※ 배정희망교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할지역내 학교를 기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외지역 중 희망지역과 함께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p>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교육지원청						
순	성명	배정일자	원적교	배정교	사유	비고

* 학생 배정 후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재 입 학 원 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자퇴 · 퇴학 년 월 일					
자퇴 · 퇴학 사 유					
<p>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자퇴 · 퇴학하였으나 다시 한 번 입학하여 제 ()학년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 년 월 일</p> <p>지원자 (서명 또는 인)</p> <p>보호자 (서명 또는 인)</p> <p>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p>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지원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주소					
최종 학력	()년 ()학년 (재학 · 제적 · 수료 · 졸업) ()년 ()검정고시 합격				
	구 분	기관(시설)명	재 학 기 간		재 학 학 년
학 교	고등학교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학년 (재학·수료)
	학력인정 기 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학년 (재학·수료)
외 학 습 경 험	국 내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학년 (재학·수료)
	비 정 규 교육시설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학년 (재학·수료)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와의 관계				
<p>위와 같이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을 신청하오니 제 ()학년에 학년결정 입학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학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p> <p>20 년 월 일</p> <p>지원자 (서명 또는 인)</p> <p>보호자 (서명 또는 인)</p> <p>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p>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학생과의 관계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p>본인은 학생()의 전입학으로 인하여 차후 법률상 발생할 지도 모를 양육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위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사실 발견 즉시 학생이 전출교로 돌아갈 것을 확인합니다.</p>			
20 년 월 일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p>※ 첨부: 작성자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p>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학생소속	고등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학생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체육특기자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p>체육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인 본교의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p>				
<p>본인은 자녀인 ()의 ()시·군 ()학교로의 전입학에 동의하며, 추후 본 전입학에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p>				
20 년 월 일				
학부모: (서명 또는 인)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0>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학생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체육특기자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p>상기 학생 ()의 ()시 · 군 ()학교로의 전입학에 동의하며, 추후 본 전입학에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p> <p>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교육장(학교장) 귀하</p>					

<서식 21>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서(진술서)

사 유 서(진 술 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전입학종류	(해당하는 전 · 편입학의 종류를 명시) 예)거주지이전 전입학			
미제출서류명				
미제출사유	(구체적으로 자필로 작성)			
<p>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구비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였으나 해당 사유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전 · 편입학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락된 서류는 여건이 갖추어 지는 대로 제출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위 사실이 거짓일 경우 귀교(기관)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조치 사항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p> <p>20 년 월 일 학부모: (서명 또는 인)</p> <p>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p>				

* 본 사유서(진술서)는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대체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전 · 편입학 신청학생의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서식 25>

타 시 · 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중 비평준화지역 입학전 전입학

타 시 · 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라북도 전입자 입학원서

지원자	성명 (인)	생년월일	접수일		...
			접수번호		
보호자	성명 (인)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타 사·도 고등 학교 입학 예정 사실 증명	현주 소				
	주택		H.P.		
<p>위 지원자는 본교 () 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마쳐, 신입생으로 배정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귀 고등학교 지원에 동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고등학교장(직인)</p> <p>학교 우편번호: () 주소: _____</p> <p>학교 전화번호: _____ 학교 FAX번호: _____</p> <p>위 지원자는 20 년 월 일 본교 (졸업예정자, 졸업자)로서 () 학년도 신입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임을 증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중학교장(직인)</p> <p>학교 우편번호: () 주소: _____</p> <p>학교 전화번호: _____ 학교 FAX번호: _____</p>					
입학 희망원	<p>상기와 같이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되어 귀 고등학교에 입학전 전입을 희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지원자 (인)</p> <p>보호자 (인)</p> <p>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p>				

<서식 26>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학교장전형고)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입학 전 전입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입학 전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 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③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다만 폐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본 입학 전 전입 배정 지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9>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별	남 · 여	접수일	20 . . .
	학교장(교육장)이 지정하는 배정 희망교(※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아님)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	학교	학교			
보호자	성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현주소				
조치 사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학 조치 사유				
<p>위 대상자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심리치료(특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p>					
20 년 월 일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직인 (사인)					
<p>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 배정희망교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할지역내 학교를 기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외지역 중 희망지역과 함께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p>					
<p>전라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p>					

<서식 30>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교육지원청

* 학생 배점 후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1>

귀국자 (편)입학 학부모 확인서

학 부 모 확 인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외국학교명 (시트명: / 열 번호:)

위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학적 서류는 외국학교의 재적학교장이 발급한 학적 서류임을 확인 하며, 만약 위·변조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학교장의 (편)입학 취소 등 모든 행정처분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지 원 자	성 명			국내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사진 (3cm × 4cm)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국 내 연 락 처								(주소) (전화번호)	
	입학구분			신입학		편입학 (학년)				
	기 간		학 력 사 항		국내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학교소재지		정규학교 여부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국가명	도시명				
보 호 자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관 계			성 명	거주국	거주시기 (기 간)	여권발급시기 (유효기간)	재외국민 등록시기(기 간)	채류기간	직업	비 고
본 인			해당 없음		(년 개월 일)	(. . .)	(년 개월 일)	거주국 제3국		해당 없음
부					(년 개월 일)	(. . .)	(년 개월 일)		해당 없음	
모					(년 개월 일)	(. . .)	(년 개월 일)		해당 없음	
<p>고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하고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고등학교(중학교) 입학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구비서류 목록에 의한 관련 서류</p> <p>20 년 월 일</p> <p>지원자 보호자</p> <p>(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p> <p>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p>										

※ 입학신청서 작성 요령

1. 지원자의 학력사항은 외국학교 전과정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의해 정확히 기재하되, 초·중·고의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을 모두 기재하고, 기간은 월·일 까지 정확히 기재
2. 체류기간은 부모는 거주기간 내에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을 기입하고 지원자는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기간과 제3국 수학시 해당 수학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기입
3. 신입학·편입학 해당란에 ○으로 표기 (편입학은 학년표시)
4. 국내 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은 초·중·고 과정으로 기입
5. 첨부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대조후 “원본대조필”을 기재하고 날인

<서식 4>

국내거주사실 확인서(재외동포 자녀용)

국내거주사실 확인서(재외동포 자녀용)

성명: (한자:)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위 학생은 재()동포 부(), 모()의 자녀로서
모국 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입국하여 아래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주소:

신청인 성명:

학생과의 관계:

년 월 일

확인자 ()동 ()통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 ()통 ()반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일반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지 원 자	성명						사진 (3cm × 4cm)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배정희망학년		편입학 또는 재취학 (학년)					
	국내학력		년 월 일까지 ()학교 ()학년 ()학기 (재학·수료·졸업)					
	국외수학기간		학력사항	국내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학교소재지	정규학교 여부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보 호 자	성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휴대전화)		
	주 소							
	국외근무내용 (정당한 해외출국 에 한하여 작성)		근무처					
			근무기간					
			국내근무처					
출 년 월 일	입 국 일	지 원 자	출 국 일	년 월 일	보 호 자	출 국 일	년 월 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와 같이 편입학(재취학)을 신청하며,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학교 측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서류: 구비서류 목록에 의한 관련 서류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